

고성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

(의안번호 제2967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5. 7. 4.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: 2025. 7. 4.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: 2025. 7. 16.

기획행정위원회 상정 ·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설명자: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)

가. 제정이유

-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과 실효성 있는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조례 목적, 정의, 책무, 의무,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
(안 제1조 ~ 제5조)
- 2) 기본계획의 수립 · 시행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3) 사업, 청렴도 조사에 관한 사항(안 제7조 ~ 제8조)
- 4) 협력체계,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(안 제9조 ~ 제10조)

다. 참고사항

- 1) 관계법령: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, 제17조
- 2) 예산조치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- 3) 합 의
 - 성별영향평가: 개선사항 없음[복지지원과-1886(2025.5.15.)]
- 4) 기 타

가) 입법예고: 고성군 공고 제2025-869호

- 예고기간: 2025. 5. 12. ~ 6. 2.(21일간)

- 예고결과: 의견 없음

나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다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라) 신구조문 대비표: 해당사항 없음

마)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: 허수은)

○ 제출 사유

- 본 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, 고성군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 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임.

○ 조례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.

- (안 제1조~제2조) 조례의 제정 목적에 조례 제정 취지를 명확히 하고, 용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정의하였음.
- (안 제3조~제5조) 군수의 책무, 공직자의 청렴 의무,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 조성의 의무를 규정하고,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며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등 청렴의무를 규정하였음.
- (안 제6조~제8조)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, 관련 사업, 청렴도 조사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, 고성군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기본계획에 따른 청렴 교육·홍보, 부패방지시스템 구축·운영에 관한 사항과 이에 필요한 청렴도 조사에 관한 등 근거를 마련하였음.

- (안 제9조~제10조) 협력체계 및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으로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·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및 관련 사업 시행에 있어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·제공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 범위는 최소한으로 한정하였음.

○ 종합 검토 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고성군 청렴도 향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과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기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, 제정의 목적 및 필요성,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5. 7. 16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